



김정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jhyunkim@hanafn.com

학력·자격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년) / 변호사
경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한양 근무, 사회연대은행 자문변호사



가문의 명예를 이어주는 유언

유언장 작성 시 필수 체크 사항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유언을 활용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라 할지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정성 들여 쓴 유언장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유언은 법률행위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 중 하나다. 그 이유는 개인이 상속재산의 배분을 가장 손쉽게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언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노년층이라면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하기 위한 밑그림을 미리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 유언이다. 유언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표시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민법은 유언을 함에 있어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의 유언 형식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장 작성,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

민법은 제1066조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유언방식이 간편하고 공정증서와 달리 유언장 작성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민법이 정하는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유일하게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언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도 용이하다. 하지만 자필증서의 유언장은 작성이 쉬운 만큼 위조와 변조의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뿐 아니라 유언내용의 집행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4가지 형식적 요건(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연월일의 작성에 있어 연월의 기재만 되어 있고 일자의 특징이 없는 경우, 주소의 작성에 있어 단순히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된 경우, 성명의 자서와 날인의 작성에 있어 날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필'에 의한 유언이므로 타인에게 필기시키거나 컴퓨터 또는 타자기로 작성된 유언, 복사한 유언장도 모두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언장의 일부가 자필이 아닌 경우에도 그 일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판단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 유언자가 단순히 '그렇게 하라'고 답하여 작성하거나 유언장의 날인 부분에 공증인이 대신 서명하여 작성한 경우라도 법원이 그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정증서에 의하면 보다 안전하게 유언 가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의 입회 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 증인 2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가장 큰 차이점이며, 유언자 입장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은 증인자격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유언으



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증인 자격이 없으며, 공증인법에서는 공증인의 친족, 공증사무소의 직원 등도 증인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시에는 유언의 내용과 무관한 제3자를 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형식적 요건에 대해 공증사무소가 모두 검토해 주기 때문에 유언자가 증인의 선정 이외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공증인은 법조인(판사, 변호사, 검사)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통하여 그 자격을 얻게 되므로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 형식적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작성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수수료(유언대상 재산가액 × 0.0015 + 21,500)는 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상한이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분실이나 파손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자필유언장의 복잡한 집행 과정

유언내용의 집행과정에 대하여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수증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절차로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유언장의 형식

유언장

유언자: 홍길동 (391230-1234567)
1939년 12월 30일 생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
②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33(해복동, 두리이파트) 123동 456호

유언사항

- 서울 종로구 종로 33(해복동, 두리이파트) 123동 456호는 딸 홍순녀에게 준다.
- 서울 종로구 종로 34번가 223호는 아들 홍준자에게 준다.
- KEB하나은행 123-45-67890 계좌에 예금인 홍준자에게 준다.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는 김두미(431223-2987618)로 지정한다.

주소는 주민등록지에 따라 상세주소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 행복동 두리이파트 (X)
행복동 두리이파트 123동 456호 (O)

유언집행자를 적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객관적 집행을 원한다면 상속인 아닌 제3자 혹은 변호사 등을 지정해준다.

날짜는 일자까지 명시한다.
ex) 2017년 8월 (X)
2017년 8월 6일 (O)

① 2017년 8월 6일 유언자 ③ 홍길동 ④ (인)

*모든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자필유언장 작성 시 check list

- 1 ①연월일 ②주소 ③성명 ④날인 등 4가지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다.
- 2 주소와 작성 일시는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적는다(주소의 경우 등·호수까지, 일시는 일자까지 기재).
- 3 서명날인을 누락하지 않는다(날인의 경우, 인감 사용을 추천).
- 4 작성과정을 촬영하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된다.
- 5 유언내용이 명확하고 최종적인 것이라면 공정증서 방식에 따르는 것이 좋다.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유언의 비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증인 불필요	2인의 증인 필요
비용	비용이 들지 않음	최대 300만원
검인	상속발생 후 검인(경우에 따라 소송) 필요	검인 불필요
장점	유언의 비밀 보장	유언장의 분실 위험 적음, 집행 용이
단점	유언장의 유효성 다툼, 위조·분실 위험	유언 내용이 증인에게 공개됨

적 사항(자필, 도장)의 진위에 관한 견해를 묻는 과정이다. 상속인들이 검인과정에서 유언장의 형식적 사항에 대해 이의할 경우, 수증자는 다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자필유언장이 4가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검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필유언장의 효력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므로 수증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직접 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다면

모든 유언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전부나 일부를 철회, 변경할 수 있으며 복수의 유언이 존재하거나 유언 후 유언자의 생전행위가 유언내용과 저촉되는 경우, 전(前) 유언은 저촉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민법 제1108, 1109조) 따라서 유언자는 유언장을 파기하거나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철회,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철회나 변경을 반드시 전(前) 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 원본이 공정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유언자가 소지한 정본의 파기만으로 철회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유언방식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유언내용을 공증받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려면

유언을 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유언사항에 관해 상속인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분쟁 가능성이 적거나 유언사항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 적절하다. 반면 유언자가 유언사항을 확정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 더 적합하다.

분쟁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유언장이 선호되는 이유는 자필유언이야말로 자녀들을 포함한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유언의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해야 할 경우, 진위에 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작성 장면을 촬영해 두는 등의 방식으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

... SUMMARY

- ① 자필유언의 경우, 작성 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아 유언내용의 기밀성을 지킬 수 있고, 작성비용이 들지 않지만 유언내용의 집행절차가 복잡하다.
- ②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경우, 형식적 유효성이 담보되고 유언내용의 집행도 수월하지만 비용이 소요되며 증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③ 유언의 철회·변경은 생전에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 유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본의 파기만으로는 철회가 불가하다.
- ④ 복수의 유언이 존재하거나 유언 후의 유언자의 생전행위가 유언내용과 저촉되는 경우, 전(前) 유언은 저촉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KEB하나 리빙트러스트
대한민국 유언대용신탁

대대손손 가문의 부와 영예를 잇는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유의

계약&집행 시 1회 신탁재산의 0.2%(최저 1,000만원)
& 0.3%(최저 1,500만원) 관리보수 연 0.2~1%

유효기간 :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광고-155호(2017.07.06~2018.0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7-03011호(2017-07-14~2018-07-13)

문의 : 02-2002-2229